

SW사업자 신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중한, 김현수, 임규건, 김병일, 양경식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인하대학교 법학과,
안양대학교 정보통계학과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oftware Company Report System

Kim, Joong Han, Hyunsoo Kim, Gyoo Gun Lim, Byungil Kim, Kyungsik Yang
E-mail : jhkim@kyonggi.ac.kr, hskim@kookmin.ac.kr, gglim@sejong.ac.kr, paulkim@inha.ac.kr,
jsyang@korea.com

요 약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는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자에게 사업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실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 시키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행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프트웨어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자등록제도의 도입방안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관리방안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서 론

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24조)에 근거하여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 등 소프트웨어 수요자에게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S/W산업의 진흥과 중소S/W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종업원수, 재무현황, 매출현황, 사업수행실적 등을 신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책판단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발주기관에게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정 사업수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신고제도의 시행목적은 현재 일부분만이 충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택하기 위해 입찰업체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 현재의 신고자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신고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와 신고한 사업실적을 기록한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지만 신고확인서나 실적확인서는 입찰참여자격을 보장해 주는 이외에 발주자에게 업체선택을 위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적확인서는 이전에 유사한 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뿐 특정 사업수행평가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입찰사업자의 기술수준, 경영상태 등은 업체평가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신뢰할만한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특별하게 비중있는 혜택이 없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은 입찰업체의 기술성평가 시 사업자신고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을 보면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부문”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신고여부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으며 또한 “성실한” 신고여부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

소프트웨어사업 실적신고를 근거로 발급하는 “소프트

웨어사업이행실적확인서”는 기술성평가 시 “개발계획 부문” 항목에 포함되며 이 항목에서 평가하는 다른 항목의 중요도와 비교할 때 평가자의 기술성 평가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결국 신고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현행 사업자신고제도는 산업통계적인 목적 이외에 산업구조의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는 부적격/부실업체가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적격업체 선정 시 기술제안서를 근거로 기술성을 평가하는데 이는 특정 사업의 기술성 위주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기술성평가 기준에는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경영상태’ 등 일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입찰업체의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보유 기술력 등 기업단위(firm base)의 전반적인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자의 전반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각 단위사업별로 평가한다면 발주기관이나 사업자에게 모두 업무중복에 따른 행정적 비용을 요구하게 되므로 정기적인 사업자 신고제도를 통해 기업단위의 평가 근거자료를 취합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업단위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단위의 기술성평가를 구분하게 된다면 소프트웨어생산물의 실수요자인 발주기관의 사전 선별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원리의 작동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현행 신고제도는 사업자의 양적인 실적데이터 이외에 수행한 사업의 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질적 측면의 사후평가정보가 축적되고 활용되도록 사업자 정보를 관리한다면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선별능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의 과거 결과물을 통해 평가받아야 생산능력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사업자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능력있고 성실한 사업자가 대접받는 시장 풍토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자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생산 실적 및 성실한 생산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성실 업체가 부실업체와 구별된다면 이것은 불성실 관행에 대한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성실관행을 정착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불성실 업체를 퇴출시키는 기능은 인위적인 진입 규제에 의하기보다

는 발주자의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 능력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2. 개선방안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가 재무현황 등 사업자의 기본정보, 전년도 사업실적 등 소프트웨어산업통계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건실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육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업능력만 뛰어난 사업자가 사업을 수주하고 이를 하도급업체에게 맡기는 등 소프트웨어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는 발주기관이 특정 소프트웨어사업을 위해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프트웨어사업 기술성평가 기준에는 경영상태 등 기업을 평가하는 일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기술평가요소와 혼재되어 있어 진정한 기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부적격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실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를 고려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본원칙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부적격업체의 시장 퇴출, 배제를 활성화되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둘째, 부적격업체 퇴출, 배제를 위한 방안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나치게 규제가 과다하여 규제의 비용이 효과를 상쇄하거나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셋째,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부적격업체 양산 원인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퇴출이나 시장 배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 첫째, 진입규제를 강화하여 등록비용을 높이는 방안
- 둘째, 입, 낙찰 과정에서 부적격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단순히 영업능력만 뛰어난

사업자가 낙찰되는 사례를 없애는 방안

- 셋째, 무자격, 부실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질 심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 넷째,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이 가운데 셋째 방안은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실시될 경우 부적격업체를 가장 확실하게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만 현재 행정능력을 고려해 볼 때 지속적인 실사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원충원에 따르는 행정부담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넷째 방안은 현 소프트웨어산업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를 통한 부적격업체 배제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가입이 임의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자율규제는 협회에 가입한 업체만이 규제 대상이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중, 장기적 관점에서 위 대안 중 첫 번째 등록제도의 도입과 두 번째 입, 낙찰 과정에서 부적격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신고제도의 전향적인 개선안을 살펴본다.

2.1 등록제도의 도입

가. 등록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소프트웨어산업의 영세성과 무질서한 난립, 그리고 혼탁한 업체풍조를 정비하고 건전한 사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시장진입단계에서 최소한의 심사 내지 평가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행 사업자신고제도가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 등 소프트웨어 수요자에게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적격업체가 시장진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증가시킴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자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사업자 등록 시 적정수준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등을 갖춘 업체만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력만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사업자신고제도에서도 기업의 재무현황,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신고하고 있으나 문제는 그 신고내용만으로는 기업상태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인력현황의 경우 기술인력, 관리인력, 영업인력, 기타인력 등으로 통계목적의 현황만을 신고하고 있어서 기업의 기술수준을 알 수 있는 항목은 누락되어 있는 형편이다. 결과적으로 신고내용에 대한 평가기능이 없음으로 발주기관이 신고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게 된다.

등록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적정수준의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행정비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실태조사인데 이는 엄청난 행정비용을 수반하게 되므로 비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에서는 사업자의 등록요건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¹⁾'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금융기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받고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는 등록 시 기업평가의 기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보증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부적격업체가 사전적으로 배제되어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증기관이 철저하게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경영상태를 엄밀하게 심사하여 결정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재무구조 건실화 및 수익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위험이 높은 투자는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상시 확인, 유지하고 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직접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증기관이 산업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 구축에도 잘 부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나. 고려사항

등록제도가 사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

1)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법정 자본금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제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항 제1호의2)

첫째, 신규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아 유효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고정비 부담을 가중시켜 이익의 폭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등록제도의 도입 초기 등록요건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적절한 평가모델의 개발 등과 함께 등록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2 단위사업평가에서의 기업정보 활용방안

가. 기술성평가기준

소프트웨어산업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각 단위사업의 사업자선정과정에서 평가는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단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기술성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한 건설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과 비교해보면 소프트웨어산업은 극단적인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발주기관의 사업자선정 능력에 시장을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등록제도, 기업평가제도 등을 통해 제공되는 기업 능력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 발주기관의 사업자선정과정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사업자의 관점에서는 경영상태, 보유기술 수준제고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건설산업
시장진입/유지	사업자 신고제도	등록제도 (보증기능금액확인서 제도)
입찰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
심사	기술성평가제도	PQ제도 (입찰자격 사전 심사)
낙찰		격리심사 제도
도급		
결과확인도		사후평가
유지/보수		

<그림 1> 타산업과의 평가기능 비교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사업자는 사업자신고제도를 통해 기초적인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발주기관은 개별 소프트웨어사업을 위해 작성된 입찰 사업자의 기술제안서를 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적정사업자를 선정한다.

기술성평가제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사업자가 제안한 패키지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정보통신부고시(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4호)를 통해 그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현행 기술성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기업평가 요소와 특정 사업의 기술성평가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부문에서 대외인지도, 재무구조,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경영상태' 항목은 '사업수행조직', '품질보증방안',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등 당해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항목과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되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총체적이고 주기적인 평가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단위 사업의 평가 시 약식으로 기업의 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부실한 기업 평가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당해 사업의 성공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업정보를 사업에 입찰할 때마다 매번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단위 사업별 평가제도는 특정 사업에 적용할 목적으로 주로 개별 사업의 특성과 관련된 기술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면, 기업평가제도는 주로 사업자의 재무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재무적 안정성과 여유정도, 경영상태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따라서 평가를 위한 분석의 깊이, 초점 및 중점 분석 요소뿐만 아니라 평가의 효과에도 차이가 있다. 기업 전체 차원(form level)의 주기적 평가를 도입하여 단위 사업 차원(project level)의 기술성평가와 연계한다면 발주기관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제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평가' 기능을 갖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발주기관, 입찰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 기업능력 평가시스템의 장점 및 한계점

능력 평가시스템의 목적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가 입찰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사업자를 선택하는데 따르는 실패를 줄이는데 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업체의 시공능력을 금액단위로 환산하여 매년 공시(매년 7.31일)하는 제도로서 그 기본취지도 입찰시 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제2항). 하지만, 기업능력 평가시스템은 발주기관과 입찰사업자 양 측면에서 각기 장, 단점을 가지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자 정보제공, 부적격업자 배제 및 경쟁확보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 기업능력평가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기업능력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은 현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실정과 향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방향, 그리고 평가제도가 지니는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능력평가제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부적격업자의 배제를 통한 입찰의 효율성을 제고하되 경쟁과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유사한 평가의 중복을 통한 행정의 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기업능력을 평가하는 기업평가제도와 특정사업의 기술성평가제도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상호연계 하에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업체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되, 평가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3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의 관리

가. 기업정보의 중요성

일반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생산물을 생산한 후 시장에 내놓고 수요자의 구매를 통해 상품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생산물을 전제로 공급자가 드러나므로 실제 생산능력이 있는 공급자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시장은 대개 선판매, 후생산의 수주산업으로 생산물을 제시하는 대신 생산 가능성만을 제시하고도 수주할 수 있다. 실제 생산능력이 판매이 후에 드러나므로 사업을 수주하는 시점에서는 생산무능력자 내지는 부적격자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누가 부적격사업자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정보가 없거나 활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업자들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입찰·낙찰단계에서 입찰업자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장에서 물건을 보지 않고 무작정 구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결과물의 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입찰업체의 사업이행능력에 대한 정보가 특정사업에 투입된 기술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결국 소프트웨어시장에서는 수요자인 발주기관이 생산자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시장 기능의 성공적 작동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현 사업자신고제도는 사업자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부터 입찰, 낙찰단계에 이르기까지 적격업자의 성실한 생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스크린과정을 두고는 있으나 그 취지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사업자신고제도는 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진입 및 유지와 관련 임의적 제도로써 특별한 진입장벽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의 신고요건마저 없으며 사업수행실적 또한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하다.

나.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관리체제 구축

생산물의 실수요자인 발주기관의 사전 선별능력과 사후 평가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원리의 작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시장에서도 수요자의 구매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 일반시장과 동일한 시장원리가 작동되도록 유도한다. 발주기관은 계약 시점에 기술성평가에 기초한 목적생산물 정보뿐만 아니라 생산자 정보를 활용하여 낙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결국 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이 시장 원리 작동의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모든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질적 측면의 사후 평가정보가 축적되고 활용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사

업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선별 능력을 제고하게 된다. 사업자의 과거 사업의 결과물을 통해 평가받아야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도태되고 능력 있고 성실한 사업자는 대접받는 시장 풍토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사업실적 및 성실한 사업수행 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성실 업체가 부실업체와 구별될 수 있다면 이것은 불성실 관행에 대한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성실 관행을 정착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불성실 업체를 퇴출시키는 기능은 인위적인 진입 규제에 의하기보다는 발주자의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 능력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자 기업정보와 관련된 중복 비용 지출을 막고 허위 신고를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집중 관리 및 cross-check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집중 관리란 수요자인 발주기관과 공급자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매개하여 양자간에 유통될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각각 정보를 제출, 관리해야 하는 중복지출과 산발적인 관리에서 야기되는 비합리성을 동시에 극복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cross-check란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양자가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허위 신고가 적발되도록 하여 부정확한 신고의 동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1) 사업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용도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최적격 업체를 선별하는데 활용할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기초 정보 풀(pool)의 역할을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공공사업에의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고 기술성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2) 적용 대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모두 해당된다. 전국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집중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업 -예컨대, 1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여타 지역 업체의 진입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발주기관 자신이 정보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보의 흐름

공공사업을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정보 관리자(가칭)에게 규정된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을 신청한다. 정보 관리자는 제출된 사업자 정보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다. 이후 변경된 정보의 갱신은 사업자의 의무 사항으로 부여한다. 공공사업 발주 시 정보 관리자는 발주기관에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입찰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고 발주기관은 낙찰업체 선정에 이 정보를 참고한다. 발주기관은 낙찰 결과를 피드백한다. 사업 종료 후 사업자는 자신의 새로운 사업실적에 대해 갱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발주기관은 결과물에 대한 양적·질적 사후 평가정보를 피드백한다.

4) 정보의 내용

현행 사업자신고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업정보 이외에 사업자의 신용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연계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수행 후 결과물 자체의 품질 또는 사업수행 활동과 관련된 사후 평가정보를 포함하여 단순한 양적 실적 정보뿐만 아니라 질적인 평가정보를 발주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적격업체 선정에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성실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수행경력을 인정받게 되어 불성실한 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건실화를 가속시키게 될 것이다.

3. 결 론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가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 등 소프트웨어 수요자에게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사업자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업자등록제도의 도입 및 사업자정보관리 등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1]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2004.4
-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개선 방향과 추진과제, 1999.12
-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자 신고 항목, 2003